

영화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문

1. 오늘 서울남부지법은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김대현 감독과 박원순다큐멘터리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대표자 민경국, 이하 제작위라고 함)을 상대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2023카합20259)을 각하하고, 서울특별시와 김잔디(가명)씨가 제기한 같은 취지의 가처분신청(2023카합44)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신청은 각하, 김잔디씨의 신청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고지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 측은 우선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 가처분신청을 당사자적격으로 각하하는 판단과 김잔디씨의 신청 중 간접강제신청을 기각한 대목을 환영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법적 근거도 없이 정치적·당파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소송제기를 이용한 것으로, 그 부적절함이 법원 결정으로 확인된 만큼 서울특별시는 각하 결정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또한 김잔디씨가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를 구했음에도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3.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3가지로 추려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결정은 도대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2차 피해가 개념상 무엇이고, 어떤 기준에서 인정되는 것인지 인정할지 아무런 전제적 설시도 없이 그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및 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김잔디씨의 신청을 수용한 것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조차 사실관계와 법리의 적용을 비평할 수 있는 터에 이제 1심판결이 났을 뿐이고, 그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는 그 어떤 이견도 피력하지 말라는 것은 이 사안에서 충돌하는 김잔디씨의 인격권·명예권의 법익과, 실제적 진실을 규명 탐구하면서 이를 표현함으로써 시민 다수와 공유·공감하고자 하는 피신청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화와 균형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방적·편향적 결정입니다.

재판부도 판결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비판, 토론 등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였으나, 판결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논리적, 사실적 비판의 질문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관객들의 인식가능성을 우려하

여 상영금지를 한 것입니다. 본 영화에서는 인권위의 결정, 행정소송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관객들이 주관적 평가를 떠나서 영화를 보고, 인권위의 결정과 행정소송 1심의 결과 그 자체를 오해할 여지는 없습니다. 객관적 현실을 관객들의 주관적 평가에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다고 김잔디씨의 주장을 진실이라고 보기에는, 특히 김잔디씨가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 보인 행태와 처신을 목격한 사람들의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결정과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반대 당사자인 고 박원순 시장의 탄핵을 거칠 수 없다는 원초적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김잔디씨 주장에 대한 탄핵은 적어도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확정시까지 김잔디씨의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것이 아닌 한에 있어서는 허용됨이 타당할 것입니다.

셋째, 이 사건 영화는 손병관 기자의 저서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영화는 이 원 저작의 내용에 전문가 인터뷰를 덧붙였기 때문에 김잔디씨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없습니다. 손병관 기자의 저작은 이미 출간되어 유통되었고, 지금도 인터넷에 그 책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잔디씨는 손병관 기자의 원 저작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런 모순을 법원이 간과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4. 김대현 감독과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는 이번 가처분 결정 중 김잔디씨 주장 인용 부분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즉각 가처분이의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5. 진실은 어떤 경우에도 새장에 가둘 수 없습니다. 김재런 변호사는 "침묵하는 것도 2차가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강요된 진리에 침묵하라는 것은 전체주의 독재체제에서나 통용될 구호입니다.

우리는 김잔디씨의 인격을 훼손할 의사가 없습니다. 김잔디씨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허위와 오류를 밝혀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김대현 감독과 제작위원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바랍니다.

2023년 9월 20일

김대현 감독과 박원순다큐멘터리제작위원회 드림